

폭력예방교육

인권센터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 **Sexual Harassment (성적 괴롭힘)**
- **지위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기관의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처리 및 징계가 결정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 민사소송은 가능

성폭력

- **협력의 성폭력**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
- **광의의 성폭력**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손상 또는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국가공권력이 처리 (경찰에 신고 및 고소 가능)**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 성희롱은 '희롱'이라는 단어때문에 다소 가벼운 어감을 주는 면이 있어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음.
- 1960년대 이후 미국 내 여성의 취업은 증가한 반면, 직장내 남성중심적 문화와 관행은 변하지 않아, 남성 상급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여성들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성적 괴롭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
-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며,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가 성희롱 성립의 조건
- 성폭력 범죄행위에 미치지 않는 수위라 할지라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인권센터 규정 내 성희롱의 정의>

3.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 집요하게 묻기
- 성적인 내용의 정보 의도적으로 유포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SNS 메시지
- 성적관계 강요, 회유하는 행위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뒤에서 껴안기)
- **특정 신체부위 만지기, 스치기, 부딪히는 행위**
- 안마나 애무 강요
- 기타 신체 접촉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영상, 만화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이메일, 휴대폰, 쪽지, 팩스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체를 아래 위로 반복적으로 훑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의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교수 또는 교직원과 학생 사이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여성 비하적인 언행을 통해 학생의 학업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 애인, 친구, 선후배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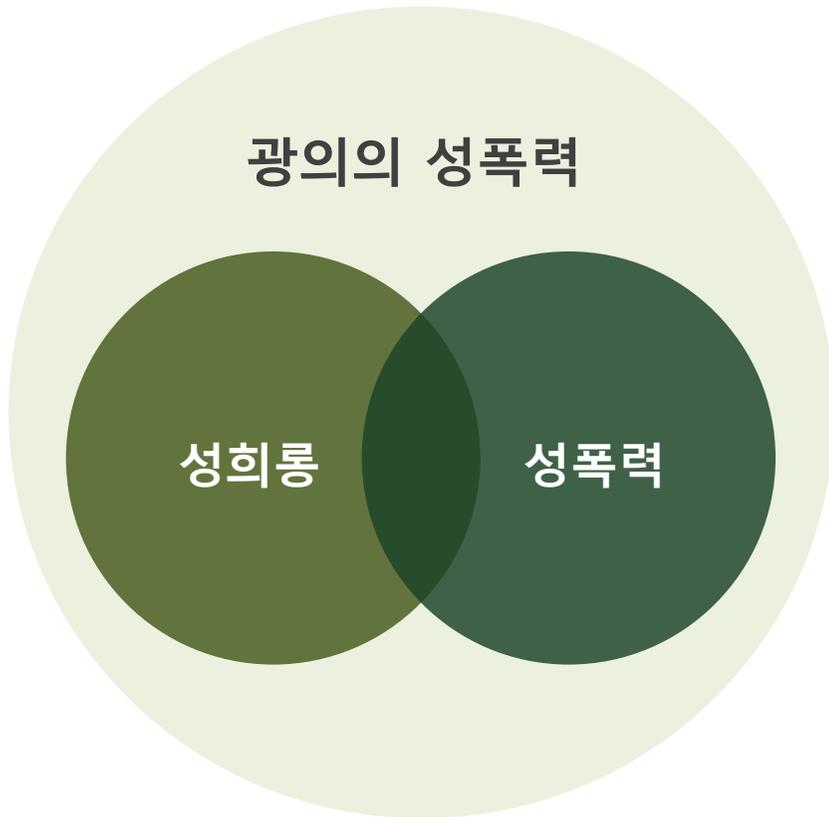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만남(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
- 데이트 강요, 성적 농담,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수업, 동아리 모임 등에서 토론이나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적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과 성폭력은 명확히 양분되지 않으며 중첩되기도 함.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폭력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권력=힘=power
- 물리적인 힘 뿐 아니라 성별, 연령, 지적수준, 경제사회적 지위, 장애유무 등을 포함
- 이러한 요소들이 관계 안에서 권력으로 작동
- 힘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
-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며, 단지 다를 뿐인 '차이'가 어느 한 쪽이 더 '우월하다'가 되면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해 왔음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대응법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하는 등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을 포괄

- **불법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
 -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
 -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증거로 제출
 -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의 단서를 기억
- **유포피해** : 반복성, 무한성, 지속성, 전파성
 - 증거를 확보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 게시물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가해자 아이디 등 유포증거 확보 후 단면 인쇄하여 고소장 작성
 - 해당사이트 운영자, 삭제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 **협박피해** : 피해촬영물을 도구로 협박 발생
 - 증거를 확보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 협박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 가해행위 채증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 지참 신고)
 - 가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모를 경우에는 신고자의 관할경찰서에 신고

▶ 불안피해

전 단계에 걸쳐 느끼는 불안과 공포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스톱킹 처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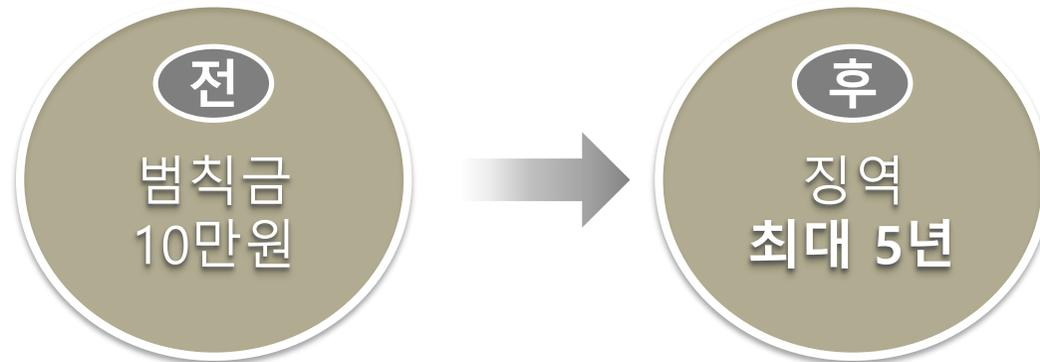
전국 스톱킹 범죄 신고 건수

2018년 : 2,772건

2019년 : 5,486건

2020년 : 4,515건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중범죄로서 가해자 처벌 강화!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유형

| 스토킹행위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 유형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 성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2항)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법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스토킹행위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아래와 같은 **경찰의 긴급조치**가 가능합니다.

응급조치

- ✓ 스토킹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 ✓ 피해자와 분리 및 범죄 수사
- ✓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스토킹처벌법 제3조)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지속 or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기간	1개월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7조)

*신고인 등의 요청 필요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아래의 조치** 청구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시

-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기간	1)2)3)	2개월(2회 연장 가능)
	4)	1개월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원의
잠정조치는
병과 가능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1조)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발생 직후 대응법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신고-방문**



- √ 안전한 장소로 피해서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신고
- √ 증거수집 위해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방문
- √ 증거채취나 사후피임약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48~72시간 내)에 방문해야 함

**당시의 증거물을
보관하여 제출**



- √ 옷 갈아입은 경우,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아 습기나 오염으로 인해 DNA 변형이 되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보관하여 증거물로 제출
- √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얼굴과 상처부위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두기 (피해사실 기록)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주변인의 역할

비난하지 않고
이야기 들어주기

비밀을 지켜주고,
2차 피해가 되지 않게
조심하기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 주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은
자제하기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여성긴급전화

연락처 1366 (카카오톡플러스ID: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지원내용 전문 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법률 기관 등 연계

www.women1366.kr

서울해바라기센터

연락처 02-3672-0365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지원내용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www.help0365.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락처 02-338-5801

이용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www.sisters.or.kr

교내 인권센터

연락처 02-3277-3229

이용시간 평일 09:00 ~ 17:00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간 이화인을 위한 인권·성폭력 대응 지침서

이화 인권 가이드북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EWhA WOMANS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22호

TEL : (02)3277-3229

E-mail : humanrights@ewha.ac.kr

Homepage : <http://my.ewha.ac.kr/humanrights>



감사합니다.